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관광개발사업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

기 관 명 충청남도

내 용

충청남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체육진흥시설지원 등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“문체부”라 한다)로부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보조금법”이라 한다) 제17조 및 19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[표]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해당 시·군에 재교부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.

[표] 관광개발사업 및 체육진흥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

< 단위 : 백만원 >

연도별	관광개발사업		체육진흥시설지원		비고
	관광진흥개발기금	지역발전특별회계	국민체육진흥기금	지역발전특별회계	
2013년	1,160	9,885	11,100	5,048	
2014년	1,375	6,237	13,715	13,961	
2015년	1,082	7,365	20,116	18,864	
2016년	2,175	12,260	14,064	12,453	
계	5,792	35,747	58,995	50,326	

※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「보조금법」 제27조제1항⁵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⁶⁾의 규정에 따르

5)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6)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

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정산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조사업 관리부서(문체부)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접보조사업자인 해당 시·군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실적보고서를 기한(3개월)내 제출하여야 했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‘○○○○○○○ 및 ○○○○○○○○ 사업’을 추진하면서 [붙임]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2014. 1. 22. 사업이 완료된 2013년 한국형 생태관광모델사업(서산시) 등 14건(3,062백만원)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의 경우 2013. 12. 31. 사업이 완료된 ○○○관광지개발(당진시) 등 11건(12,304백만원)의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은 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(3개월)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, 2016. 12. 19. ○○○○○교육장 조성(계룡시) 사업 등 4건의 경우 해당 시·군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2017. 12. 1. 감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에 제출하지 않았다.

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2013. 12. 31. 사업이 완료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(공주시) 등 47건(19,652백만원)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의 경우 2014. 1. 9. 사업이 완료된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사업(태안군) 등 45건(23,636백만원)의 실적보고서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(3개월)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

그 결과 위 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2017. 12.

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(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)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감사일 현재까지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(3개월) 내에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확정이 지연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

[주의] ①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한(3개월) 내에 제출하지 않은 실적보고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② 앞으로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,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내역

연번	사업명	사업승인 및 교부결정		사업완료일	실적보고서 제출기한	실적보고서 제출일	해당 시·군
		국고보조금 (백만원)	사업기간				
1	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	400	2013. 4.~ 2014. 1.	2014. 1.22.	2014. 4.21.	2015.12.31.	서산시
2	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	490	2013. 4.~ 2015.12.	2015.12.15.	2016. 3.14.	2017.11.22.	태안군
3	○○○○ ○○○○	190	2013. 4.~ 2013.12.	2013.12.31.	2014. 3.30.	2014. 6.10.	예산군
4	○○○○ ○○ ○○○○	400	2014. 4.~ 2015.12.	2015.12.16.	2016. 3.15.	2017.11.22.	서산시
5	○○○○ ○○ ○○○○	400	2014. 4.~ 2016. 5.	2016. 5.30.	2016. 8.29.	2017.11.22.	태안군
6	○○○○ ○○ ○○○○	100	2015. 2.~ 2016.10.	2016.10.10.	2017. 1. 9.	2017.11.22.	서산시
7	○○○○ ○○ ○○○○	400	2015. 4.~ 2016.12.	2016.12.20.	2017. 3.19.	2017.11.22.	태안군
8	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	130	2015. 3.~ 2015.12.	2015.12.31.	2016. 3.30.	2016.11.25.	예산군
9	○○○○ ○○○ (○○○○ ○○)	50	2015. 4.~ 2015.11	2015.11.19.	2016. 2.18.	2016. 3.22.	부여군
10	○○○○ ○○○○	310	2015. 4.~ 2016.12.	2016.12.30.	2017. 3.29.	2017. 6. 8.	아산시
11	○○○○○ ○○○○	30	2015. 6.~ 2016. 6.	2016. 6.29.	2016. 9.28.	2016.12. 7.	태안군
12	○○○○ ○○○○ (○○○○○ ○○○)	10	2015. 10.~ 2015.12.	2015.12.29.	2016. 3.28.	2017.11.22.	당진시
13	○○○○ ○○○○ (○○○○○ ○○○)	52.5	2015. 10.~ 2016. 5.	2016. 5.23.	2016. 8.22.	2017.11.22.	태안군
14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	100	2016. 2.~ 2016.12.	2016.12. 6.	2017. 3. 5.	2017.10.12.	보령시
계		3,062.5					

※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